강 원 특 별 자 치 도

시정(회수)

제　　목 휴가사용, 연가가산 등 복무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각 부서

내　　용

1. 개요

○○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휴가 등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적사항

가. 공가대상이 아님에도 공가 사용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8조의2에 의하면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

1)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공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2020.10.20.)」 ‘제8장 휴가’, ‘다. 공가’,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나)’에 따르면 원격지간(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에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전보 시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의 다음 정상근무일 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소방공무원 근무지침(2021.1.20.)」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24시간 전일 또는 3조 교대제 야간근무자가 다음날 교육, 출장 등 공무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근부서의 장은 출동력에 지장이 없을 경우 해당 근무자를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공가를 사용할 경우, 공가 사용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승인받아 사용하여야 하고, 공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출장의 경우 출장 전일(前日)이 24시간 전일(全日) 또는 3조 교대제 야간근무인 경우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하거나, 주간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제5호 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30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

12. 「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오렴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시간만큼 조퇴(연가) 등을 사용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 대상 기간(2018. 9.~현재) 동안 ○○소방서 휴가 등 복무 관리현황을 확인한 바 소방○ ○○○은 교육입교를 위해 공가를 등록한 후 출장비와 초과근무 18시간을 인정받았고, 소방○ ○○○와 소방○ ○○○은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편도 4시간 미만의 기관으로 전보되었음에도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여성보건 특별휴가 사용자에 대한 급여지급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강원도 조례, 시행 2018.7.13.)」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4조에 따르면 ‘보수’란 봉금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같은 규정」 제27조에는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 만큼 봉급 일액을 빼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속공무원이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휴가 사용일수, 특별

휴가에 따른 급여 유·무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무급인 경우 봉급에서 사용일 만큼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의 경우 2019. 1월부터 3월까지, 소방○ ○○○의 경우 2020. 2월 여성보건 특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하여야 했으나 봉급을 일할 계산하지 않아 272,89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다. 연가가산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에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8장 휴가’, ‘4. 휴가 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2) 연가 일수의 가산’에서는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3]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한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란에 기재하고 승인권

---

2) 1. 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3)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공로퇴직연수기간,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 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싱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직제나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직위해제·공로연수·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대기발령·연도 중 임용된 신규자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를 산정할 때 연가를 가산하여서는 안 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소방서 종합감사대상기간(2018. 9.~현재) 연가 가산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31명이 법정연가일수에 연가 미사용 또는 병가 미사용을 사유로 연가를 가산한 사실이 있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가. 관련자 의견

의견 없음.

나. 관련자 의견에 대한 판단

판단이 필요하지 않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처분대상 없음

5.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회수)] 휴가·연가가산 등 복무관리가 잘못되어 지급된 급여 및 수당

2,275,860원을 회수하시고, 2023년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소방○ ○○○의 근무상황을 수정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시정(회수)

제　　목　**특정업무경비, 급량비 등 지출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개요

○○**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와 급여 및 수당, 등의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적사항

가. 특정업무경비 지출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4조 제2호 업무추진비의 기본경비 '별표2의 6호[4]'에 의하면,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4) 특정업무경비

(단위: 원)

구 분		대　상	월 액
공통 필수 항목	구조구급활동비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 구급업무담당공무원	100,000
	방 호 활 동 비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	170,000

활동비를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급대상은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13조 제1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별표2', '5-2. 특정업무경비(204-03)' 에 의하면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업무에 퇴직, 직책 신설 또는 해외연수, 교육, 파견, 병가, 휴직 등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소속 직원의 급여 등을 지급할 때에는 직원들의 복무관리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휴직, 장기교육, 병가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 대상 기간(2018. 9.~현재) 동안 휴가, 교육입교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방호활동비 170,560원, 구조구급활동비 107,76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나. 급량비 지급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식비를 지급할 경우 급식제공 대상자가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확인 가능한 객관적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하여야 하고,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은 근무지 외 국내출장자가 출장종료 후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출장여비의 식비와 매식비를 중복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감사 대상 기간(2018. 9.~현재) 동안 ○○소방서로부터 급량비 지급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총 66건에 대한 관외출장에 따른 식비가 포함된 출장여비를 지급하였음에도 같은 날 야근 매식비 등의 사유로 511,230원을 중복하여 집행하였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 관련자 의견 없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처분대상 없음

5.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회수)] 휴가, 장기교육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초과 지급된 특정업무경비 278,320원 및 관외출장여비와 중복지급된 급량비 511,23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통보, 권고

제　　목　소방 무인비행장치의 운용・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개요

○○소방서(○○○○과, ○○○○○○)에서는 다양한 재난현장에서의 신속한 상황 파악과 요구조자 인명검색 등 선제적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활용되는 무인비행장치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적사항

가. 소방 무인비행장치 관리 소홀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항공안전법」[법률 제18789호, 시행 2023. 1. 19.] 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95호, 시행 2022. 8. 4.]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5]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소방청훈령 제266호, 시행 2022. 7. 1.] 제3조, 20조, 21조, 24조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무인비행장치 관리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관리 및 운용계획에는 무인비행장치의 전담부서, 운용인력, 도입계획, 예산확보, 교육훈련, 점검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방안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운용자 등은 다음 각 호[6]의 구분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여야 하고,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기록을 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에 기록하며, 매월 월간 운용실적을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방서(○○○○과)에서 2020년 12월 시행한 “소방장비 일일점검 일지 작성 시행 알림”[7]에 따르면 소방장비 일일점검 실시 후 각 부서별 기록 방법 차이와 타 관서에서 소방장비 점검일지 미작성에 대한 감사에 지적됨에 따라 자체 지침을 시행하여 각 부서에서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점검을 하여 기체에 이상이 없는지 관리하여야 하며,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기록을 운용일지에 기록하고, 매월 무인비행장치 운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

5)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방안
1.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점검계획
2. 비행안전수칙 및 교육계획
3.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4. 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대책
5. 긴급비행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 무인비행장치 정기점검 등
1. 일일점검: 배터리 충전상태, 기체 및 임무장비의 외관·작동상태
2. 주간점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점검
3. 특별점검: 특수한 결함이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점검 장비를 갖춘 기관·단체, 전문업체 등에 의뢰하여 점검

7) ○○소방서 ○○○○과-12545(2020. 12. 1.)호「소방장비 일일 점검일지 작성 시행 알림」

그러나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3. 6. 14. ~ 6. 23.) 중 무인비행장치의 일일·주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일점검의 경우 14건, 주간점검의 경우 21건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일지 작성 및 운용실적 보고결과를 확인한 결과 해당 월에 실기교육을 하였음에도 운용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2021년 10월, 2022년 12월 운용실적을 작성하지 않는 등 관리 및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

나.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자 교육훈련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항공안전법」[법률 제18789호, 시행 2023. 1. 19.] 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소방청훈령 제266호, 시행 2022. 7. 1.] 제3조, 19조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무인비행장치 관리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관리 및 운용계획에는 무인비행장치의 전담부서, 운용인력, 도입계획, 예산확보, 교육훈련, 점검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방안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운용자 등의 조종기술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8]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운용자 등의 비행이론, 항공관련 법령, 현장 안전관리 등 이론교육을 월 2시간 이상, 기체 적응 비행 및 수직 이·착륙, 비상시 조치요령 등 실기교육을 월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3. 6. 14. ~ 6. 23.) 중 무인비행장치의 교육훈련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였어도 최소 교육훈련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운용자 조종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소홀히 하였다.

다. 소방 무인비행장치 자격기준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항공안전법」[법률 제18789호, 시행 2023. 1. 19.]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에 따르면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한 자격기준, 시험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9]의 구분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별로 구분하여

---

8) 소방 무인비행장치 교육훈련
1. 이론교육: 월 2시간 이상
 가. 비행이론, 항공관련 법령
 나. 기체의 제원 및 성능
 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실기교육: 월 4시간 이상(모의비행 시간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
 가. 기체 적응 비행 및 수직 이·착륙, 비상시 조치요령
 나. 공중조작 및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다. 기체점검 및 정비 요령 등

9)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한 자격기준

달리 정해야 한다.

그리고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소방청훈령 제266호, 시행 2022. 7. 1.] 제7조에 따르면 조종자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에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부조종자는 소방교육훈련기관에서 무인비행장치 교육과정(1주 이상)을 이수한 사람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상응하는 조종 능력을 가진 사람(조종자 증명 보유자 포함)으로서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 ○○○○○○)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의 최대이륙중량을 확인하여 조종자 등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에 상응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을 취득하고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여 재난대응 시 활용했어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3. 6. 14. ~ 6. 23.) 중 무인비행장치 운용자 자격취득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조종자 등 21명 중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자 3명과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자 3명을 제외한 15명 중 11명이 조종자 및 부조종자 자격기준을 갖추지 않는 등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부적합하게 하였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관련자 의견 없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처분대상 없음

---

1.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2.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3.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4.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5. 조치할 사항

가. ○○소방서장은

[통보] ①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실시하여 주시고, 훈련 등 무인비행장치 운용 시 비행기록을 운용일지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② 무인비행장치 운용자 조종기술 향상을 위한 개인별 교육훈련 시간을 준수하시고, 기준에 맞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을 취득하는 등 추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본부 ○○○○과장은

[권고] 관서별 드론 운영·관리계획 및 운용자 교육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고, 드론 도입 시 상황실 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기종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주의, 시정, 권고

제　　목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각 119안전센터

관 련 자 ①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

②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

③ ○○소방서 ○○○○○(前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

④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119안전센터) 소방○ ○○○

⑤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

⑥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119안전센터) 소방○ ○○○

⑦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

⑧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

내　　용

1. 개요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는 화재,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 활동 시 활용되는 호흡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적사항

가. 공기호흡기 용기 재검사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65호, 시행 2023. 5. 16.] 제28조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호흡기 등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소방청훈령 제327호, 시행 2023. 6. 16.] 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호흡보호장비를 [별표 7][10]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법률 제18269호, 시행 2021. 12. 16.]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산업통산자원부령 제469호, 시행 2023. 6. 3.] 제39조에 따르면 공기호흡기 용기는 이음매 없는 용기에 해당하여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재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공기호흡기 용기를 신규검사일 또는 최종 재검사일부터 5년 또는 3년마다 재검사를 실시하여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안전확보 및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

10) [별표 7]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 7.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1) 공기충전기는 제1호 서식에 따라 주 1회 이상 점검하되 점검주기와 점검방법은 제조사 권장기준을 따를 수 있다.
4) 고압용기에 충전된 호흡용 공기는 매 6개월마다 공기를 배출한 후 새로운 공기를 충전하여 보관한다.
7) 호흡보호장비를 세척·충전·수리 및 불용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방장비관리법」 제40조에 따라 구축된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그 관리 이력을 입력한다.

그러나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3. 6. 14. ~ 6. 23.) 중 공기호흡기 용기 세부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공기호흡기 용기 72개에 대하여 재검사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 및 그 성능을 유지하려는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나. 공기충전기 주간점검 등 관리 소홀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65호, 시행 2023. 5. 16.] 제28조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호흡기 등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소방청훈령 제327호, 시행 2023. 6. 16.] [별표 7]에 따르면 공기충전기는 주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주요장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1주일에 최소 30분 이상을 가동하여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충전실의 운영을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21년 3월 소방청에서 시달한 “공기호흡기 공기 교체 주기 강화 운영기준 알림”[11]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공기질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공기호흡기 공기 교체 주기를 기존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2021. 3. 10.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는 안전관리자 부재 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주 1회 이상 공기충전기를 점검하여야 하며, 공기충전기는 주요 장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1주일에

11) 청 장비기획과-1051(2021. 3. 9.)호「공기호흡기 공기 교체 주기 강화 운영기준 알림」

최소 30분 이상을 가동하여야 하고, 고압용기에 충전된 호흡용 공기는 매 6개월마다 공기를 배출한 후 새로운 공기를 충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점검 및 충전결과를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함이 타당하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3. 6. 14. ~ 6. 23.) 중 공기충전기 주간점검 실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52건 중 11건(2건은 안전관리자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안전관리자 부재 시 주간점검을 미실시) 주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41건은 공기충전기 가동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공기충전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공기호흡기 용기 284개에 대해 충전 기한을 초과하여 충전하는 등 고압용기 유지·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관련자 의견 없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는 2020. 1. 6.부터 2021. 7. 4.까지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공기호흡기 충전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20. 3. 5. 및 2021. 2. 4. 총 2회 공기호흡기 주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은 2020. 2. 3.부터 2021. 7. 4.까지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공기호흡기 충전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20. 9. 24. 공기호흡기 주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소방서 ○○○○○(前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은

2019. 8. 5.부터 2022. 7. 13.까지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공기호흡기 충전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20. 12. 10. 공기호흡기 주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119안전센터) 소방○ ○○○은 2020. 8. 20.부터 2022. 1. 16.까지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공기호흡기 충전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21. 1. 7. 공기호흡기 주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은 2018. 1. 4.부터 2021. 7. 4.까지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공기호흡기 충전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20. 6. 25. 공기호흡기 주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119안전센터) 소방○ ○○○은 2020. 7. 2.부터 2022. 5. 3.까지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공기호흡기 충전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21. 10. 7. 공기호흡기 주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는 2021. 10. 27.부터 2022. 1. 16.까지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공기호흡기 충전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21. 12. 2. 공기호흡기 주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 2022. 7. 1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기호흡기 충전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22. 9. 15. 공기호흡기 주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상기와 같은 사실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8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소방)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주의” 사유에 해당한다.

5. 조치할 사항

가. ○○·○○·○○소방서장은

[주의] 공기충전기 주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소방○ ○○○, 소방○ ○○○, ○○○, ○○○, ○○○, ○○○, ○○○,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충전원 부재 시 충전원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수행에 누락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본부 ○○○○○○과장은

[권고] 공기호흡기 및 잡수장비 용기 검사 기한 초과 및 공기충전기 정기점검이 월활히 이루이지고 있지 않아 호흡보호장비 관리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해 주시고, 정기 및 위생점검 관리업무를 본부에서 위탁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경고, 통보

제　　목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등 관리업무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

내　　용

1. 개요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강원특별자치도규칙 제3261호, 시행 2022. 12. 30.] 제36조 제3항에 따라 총 364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적사항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기본법」[법률 제19026호, 시행 2023. 5. 16.] 제10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주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98호, 시행 2023. 5. 16.] 제7조,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04호, 시행 2023. 1. 30.] 제12조, 제13조,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소방청훈령 제274호, 시행 2023. 1. 1.] 제22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은 즉시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고장 등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통보하는 등 사후조치를 하여 화재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 및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용수시설의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즉시 담당부서에 고장발생보고를 통해 수리요구를 하여야 하고, 이를 담당부서에서는 대체 소방용수를 지정하여 고장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리요구를 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즉시 수리하여 항시 가용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3. 6. 14. ~ 6. 23.) 중 고장발생 소방용수시설 후속 조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장발생 소방용수시설 7개소(2019년 3개소, 2020년 4개소)의 고장 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고장발생 보고, 즉시 고장사실 전파 및 대체 소방용수시설을 지정하여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고장발생으로 수리 요청한 소방용수시설의 소방용수조사부를 확인한 결과 ○○○○○호의 경우 2019. 6. 20. 소방용수 관리카드 현행화 추진 점검 중 소화전 스핀들이 불량하여 소화전 개폐가 불가하나, 제수변 개폐로 소방용수는 사용가능함을 확인하고 고장발생 보고가 이루어지는 등 후속 조치는 적절하였으나, 2021년 1월 소방용수가 수리완료되어 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화전이 고장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용수조사부 스핀들 개폐여부에 “양호”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을 소홀히 하였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관련자 의견 없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은 2019. 11. 21.부터 2022. 1. 16.까지 ○○119안전센터 ○○지역대에 근무하면서 ○○○○○호 소화전 담당자로 지정되어 관리하던 중 소방용수 관리카드 현행화 추진 점검 시 소화전 스핀들이 불량하여 소화전 개폐가 불가하나, 제수변 개폐로 소방용수는 사용가능함을 확인하고 고장발생 보고가 이루어지는 등 후속 조치는 적절하였으나, 2021년 1월 소방용수가 수리완료되어 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화전이 고장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용수조사부 스핀들 개폐여부에 “양호”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상기와 같은 사실은「소방기본법」제10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및「(소방)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

5. 조치할 사항

가. ○○소방서장은

[경고] 고장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소방용수조사부를 수개월 간 사용가능으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을 소홀히 한 소방○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서장은

[통보] 추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시정

제　　목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 및 무면허 시공**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개요

○○소방서(○○○○과)에서는 화재와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동의 및 착공신고 등 관련 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지적사항

가. 소방시설공사 도급위반에 관한 사항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그리고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 당사자 간에는 공정하고 적합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그 밖의 사항을 계약서에 밝히고,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하여야 하고, 관계인 또는 발주자에게서 도급받은 원도급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전부 하도급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12]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3. 6. 7. ~ 6. 23.) 중 건축허가 소방동의 대상 소방시설 미착공 대상에 대하여 건축 허가관청의 건축 착공신고 현황을 협조 받아 확인한 결과, "○○군 ○○면 ○○리 ○○○○-○ 소재「○○○건축물」"의 건축 착공신고가 건축허가청에 신고(2022. 9. 7.)되었고 건축착공신고 시 제출된 관련서류(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13])을 확인한 바, 공사원가계산서 세

---

12)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 자격 기준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6. 22., 2017. 7. 26.>
③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1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시공사 건설업등록증, 사공사 사업자등록증, 시공사 통장사본, 시공사 인감증명서,

부내역에 소방시설공사(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은 해당 건축물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건축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에 건축공사와 묶어 일괄 발주하여 부적정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또한,「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14]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3. 6. 7. ~ 6. 23.) 중 ○○○건축물 건축착공 장소를 현장확인(23. 6. 15.) 한 결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면허가 없는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전선관 등 공사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다.

공사원가계산서

14) ①「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6. 22., 2017. 7. 26.>

③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2. 13.>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따라서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에서만 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공사업 등록면허가 없는 건축공사업체 주식회사 ○○○○○○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도급받아 소방시설을 시공한 사실이 있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가. 관련자 의견

별도 의견 없음.

나. 관련자 의견에 대한 판단

별다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5. 조치할 사항

가. ○○소방서장은

[시정]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고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정하게 계약(도급)을 체결한 건축주 및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 상태로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주식회사 ○○○○○○의 대표자에 대하여 입건조치 등 “시정” 바랍니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주의, 통보

제　　목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서류 검토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소방서 ○○○○과 소방○ ○○○

내　　용

1. 개요

○○**소방서(**○○○○**과)**에서는 화재와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등 관련 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지적사항

가.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서류 검토 소홀에 관한 사항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소방시설 공사업자는 대통령령[15]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의 착공

1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1. 신축: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등

전까지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에 [표1] 과 같이 관련 서류내역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표1]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시 첨부 서류

착공신고서 첨부서류	1.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 1부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소방시설 공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16]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표1]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소방시설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2. 증축: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등
3. 교체 및 보수: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16) 1. 시공자

2.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3.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3. 6. 7. ~ 6. 23.) 중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증명서 발급현황을 확인한 결과, ○○소방서(○○○○과)에서는 “○○군 ○○면 ○○리 ○○-○ 소재 「○○터널 신축공사」”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신청서를 접수(‘22. 3. 8.)하고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당일(’22. 3. 11.)까지 완공검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한이 있었음에도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에 기재된 소방시설 완공내역과 착공신고 시 신고된 소방시설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서류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소방시설 착공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및 제40조 제1항 제1호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 없이 소방시설 완공검사신청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가. 관련자 의견

별도 의견 없음.

나. 관련자 의견에 대한 판단

별다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은 2019. 6. 4.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서 ○○○○과에서 소방민원업무를 담당하면서 2022. 3.경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의무를 태만이 한 공사업체에 과태료부과

등 적정한 행정처분 없이 완공검사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같은 법」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을 때’처분하는 “주의”사유에 해당한다.

5. 조치할 사항

가.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를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향후 소방시설 착공 등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담당자의 관계법령 및 직무교육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